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1. 12. 9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21년 11월 15일

나. 발 의 자: 고기판·윤준용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: 2021년 11월 19일

라. 상정일자: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1. 11. 23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윤준용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개정('19. 3. 28)으로 참전명예수당 중복지급 금지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, 구에서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의 중복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여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참전유공자 등에게도 우리 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(안 제3조)

○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 서울시 조례의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규정 삭제 (안 제10조)

○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원배)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개정 ('19. 3. 28)으로 참전명예수당 중복지급 금지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구에서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의 중복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여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참전유공자 등에게도 우리 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자 제출된 안전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3조에서는 조문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으로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을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하였고,
- 안 제10조에서는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서울시 보훈수당(참전명예수당, 생활보조수당)을 받는 보훈대상자에게 우리 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함.
- 그 밖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

- 국가를 위해 희생·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에 따라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와 자치구 보훈예우수당 간 중복지급 금지 단서가 삭제됨으로써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게도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이 가능하므로 우리 구 조례에서 중복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임.

- 검토결과,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서울시 조례 개정
에 따른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
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고기관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1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21년 11월 일
발 의 자: 고기관 의원,
윤준용 의원 외 4명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개정('19. 3. 28)
으로 참전명예수당 중복지급 금지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구에서
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의 중복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여 구 보훈
예우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참전유공자 등에게도 우리 구 보훈
예우수당을 지급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 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3조)

나.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 서울시 조례의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
규정 삭제(안 제10조)

다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 정비

3. 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가보훈 기본법」

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입법예고(2021. 11. 12. ~ 11. 16.) 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3조제6호 중 “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하는 때”를 “할 때”로, “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”를 “국가보훈대상자에게”로, “행하여야”를 “하여야”로 한다.

제6조제2호 중 “보훈관련”을 “보훈 관련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제3조제1호 부터”를 “제3조제1호부터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창달”을 “발전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창달”을 “발전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 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<u>관하</u> <u>여 필요한</u>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필요</u> <u>한</u> ----- -----.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“구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사람으 로 한다.	제3조(적용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 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단 체 또는 회원	6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<u>단체설립에 관한 법률</u> 」----- -----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예우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 은 국경일·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<u>하는 때에는</u>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,	제5조(예우)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할 때</u> ----- ----- -----

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
에 대하여는 의전상의 예우를
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공헌선양사업의 추진 등)
구청장은 희생·공헌자의 공헌
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기
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
진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
때에 구 지역출신 희생·공헌
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

3. · 4. (생략)

제10조(보훈예우수당의 지급) ①
구청장은 제3조제1호 부터 제6
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
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
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
보훈예우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
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 <단서
신설>

②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
원 부적격자로 통보되거나 「서
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

----- 국가보훈대상자에
게-----
하여야 ----.

제6조(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) 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보훈 관련 -----

3. · 4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보훈예우수당의 지급) ①

----- 제3조제1호부터 -----

----- . 다만,

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지

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

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<삭 제>

<u>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.</u>	
③·④ (생략)	②·③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
제12조(민간의 참여조성) 구청장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<u>창달</u>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	제12조(민간의 참여조성) ----- ----- ----- -- <u>발전</u>----- ----- -----.
제13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) 구청장은 희생·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<u>창달</u>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	제13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) ----- ----- ---- <u>발전</u> ----- ----- ----- -----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<u>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14조(시행규칙) ----- -- <u>필요한</u> ----- -----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가. 관련조례: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- 나. 조례개정: 제10조(보훈예우수당의 지급)
-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중복금지 조항 삭제 (안 제10조 제2항)
 - 서울시 보훈수당(참전명예수당, 생활보조수당)을 받는 보훈대상자도 보훈예우 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개정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가. 영등포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확대
- 지급대상: 2,200명⇒ 3,600명(市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1,220명, 생활보조 수당 지급대상자 180명 추가)
- 나. 월 4만원 12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비용추계
- 2022년 1만원 인상(2021년 3만원 ⇒ 2022년 4만원)

3. 비용추계의 결과

가. 지급대상자 추가 비용 추계 (단위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
구분	지급예상인원	1,400	1,400	1,400	1,400	1,400
	1인 지급액	40	40	40	40	40
	1인 년 지급액	480	480	480	480	480
	예산소요액	672,000	672,000	672,000	672,000	672,000

나. 지급대상 확대지급시(기존+신규 추가) 비용 추계 (단위: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
구분	지급예상인원	3,600	3,550	3,500	3,450	3,400
	1인 지급액	40	40	40	40	40
	1인 년 지급액	480	480	480	480	480
	예산소요액	1,728,000	1,704,000	1,680,000	1,656,000	1,632,000

※ 연도별 지급예상인원은 3년간 사망위로금 지급 인원 평균으로 산출

4. 작성자 :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박종무(2670-3387)